

■ 마포구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 기준 및 조건

1. 배정방법 : 신청서에 기재한 차량정보 및 거주정보를 기초한 점수를 반영하여 배정
2. 배정심의대상 :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자
 - ※ 매년 2·5·8·11월의 말일까지 다음분기 정기신청 마감(정기 배정확정 : 마감달의 익월 5일)
 - ※ 정기배정 이후 잔여구획 발생 등에 따라 수시 접수(신청), 배정
3. 배정우선순위 선정(우선순위 중 배정표 점수에 따라 배정)
 - 제1순위 : 배정(신청)일 현재 지역 내에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상이자,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장애등급 1~3급(시각장애인은 1~4급)을 대상으로 배정점수 순서에 의거 배정(동점 시 ①장애등급 높은 순 ② 관내 전입일이 빠른 순)
 - 제2순위 : 1순위 우선 배정 후 관내 거주자 중에서 배정점수 순서에 의거 배정(동점 시 ①관내 전입일이 빠른 순 ② 자동차 배기량이 낮은 순)
 - 제3순위 : 2순위를 우선 배정 후 잔여구획을 비거주자(관내 사업자 및 사업장 근무자)의 상위점수(해당차량 합계 점수) 순서에 의거 배정(동점 시 ①자동차 배기량 낮은 순 ②관내 사업개시연월이 빠른 순)

<표 1> 마포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세부 배정기준 점수표

선 정 항 목		점수	비 고
관내 전입일 (거주자)	- 거주연수 = 거주기간 × 1.0 - 거주월수 = 거주월수 × 0.09 ※ 최대 적용 값 : 20점미만 적용	20	주민등록 등본 참조 (마포구 전입기간)
차종별 (공통)	① 경차	5	자동차등록증 참조
	② 소형차량(1000cc 이상 ~ 1500cc 미만)	2	
특별가산점 (가점)	국가 유공자 상이자 및 장애인(1~3급), 고엽제 휴유증환자로 등록된 차량, 단, 시각장애인(1~4급)	10	입증 서류 첨부 시
	기타 장애인(4급 ~ 6급) 차량	5	
우대가점	승용차 요일제 참여자(전자태그 부착)	10	입증 서류 첨부 시
	10년 이상 장기사용차량	5	자동차등록증 참조
	저공해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(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)	5	자동차등록증 참조
	65세 이상 고령자 차량	5	입증서류 첨부 시
	1가구(또는 사업장) 다차량중 4번째 차량	-30	
	1가구(또는 사업장) 3차량중 3번째 차량	-20	
	1가구(또는 사업장) 2차량중 2번째 차량	-10	
기사용(수해)자 탈락횟수	배정 1회마다(누적 적용 횟수 4회)	-3	예) 1회배정시-3점 2회연속배정시-6점
	매회 탈락 시(누적 적용 횟수 4회)	3	예) 1회탈락시3점 2회연속탈락시6점가산
마포구에 소재한 사업자 또는 사업장 근무자	- 관내 사업개시 연수 = 기간 × 1.0 - 관내 사업개시 월수 = 월수 × 0.09 ※ 최대 적용 값 : 20점미만 적용	20	사업자등록증 참조 비거주자(3순위) 별도 적용

비 고

1. 동일 주차구획에 대한 이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선정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신청인을 우선 선정
2. 장애인 가점은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 및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내 장애인에 있는 경우도 가점부여
3. 위 기준 외에 “심의위원회(마포구시설관리공단)”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4. 기사용(수해)자, 탈락횟수 누적은 1년 단위 기준으로 재적용

- 신청서 허위(착오)기재, 신청관련 서류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배정 전, 후를 불문하고 배정(지정)이 취소 됨.
- 신청내역(배정확인 포함)은 이용자가 확인하여야 하며, 신청내역에 대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
4. 신청자격

- 신청일 현재 ①관내 거주자 ② 관내에 사업장(근무처)이 있어 주간(또는 전일)에 빈 주차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.
- ※ 우선배정제외대상 : ①관련법령상 차고지(주차장)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(영업용 차량(렌터카 포함), 2.5톤 이상 화물차, 16인승 이상 승합차, 특수차량 등) ②주차장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③동일 차량을 2개 구간(전용구획 포함) 이상에 중복배정하지 않음(중복 신청에 의한 배정 시 배정 전후를 불문하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배정취소 등 임의 처리)
- ※ 기타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
- ※ 우선배정제외대상이라도 주차여유구획 발생시①,③의 경우 배정우선순위에 따라 배정 가능(민원 발생(또는 제기) 시 배정을 취소)

5. 배정(지정) 원칙

- 거주자가 직계 또는 형제의 차량으로 신청하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(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제출, 확인 시)
- 거주자가 타 지역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된 차량으로 배정신청을 하는 경우 재직 증명서 등의 사실 확인 후 거주자 배정
- 주차 장소는 주차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주차구간(구획) 지정기간은 3개월(분기) 단위이며 주차요금도 지정기간 요금을 선납 하여야 함.
- 주차요금을 납기 내 미납한 경우에는 지정취소하고 취소 분은 후 순위자(또는 대기자)에 배정함.(미납 시에는 예고 없이 배정이 제한될 수 있음.)
- 개인운송사업자 차량(개인택시, 2.5톤 미만의 개인용달 및 화물)이 거주자 소유인 경우 거주자로 간주
- 공사 등으로 인해 구획선이 삭선 되거나 기타 이용불가 사유 발생시에는 대체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①해당구간 지정일이 늦은자 ② 지정순위가 늦은 자 순을 지정 (배정) 중지 또는 취소함.
- ※ 공사 등으로 인해 주차구획이 삭선 되는 경우 수시 분 배정 시 우선 배정 가능
-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차량변경 시 주차권을 교체하여야 하며 중도 이용 중지 시에는 주차권 반환일로부터 일 또는 월할 계산하여 환불 처리함.

6. 배정(지정) 취소(제한)

- 주차구획 배정 후 7~15일(전용주차구획은 30일)이 경과하여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우리 공단 직권으로 취소
- 기타 배정(지정) 원칙, 사용조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거주자우선주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익을 붙여 전대한 경우
- 신청서 허위(착오)기재, 신청관련 서류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배정 전·후를 불문 하고 배정(지정)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
7. 배정자 사용조건

- 주차권 미부착시 단속(견인) 대상이 됨.
- 지정된 주차구획 내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 금지 및 청결유지
- 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으므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차량 훼손 및 도난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책임이 아님(주차구획 관리주체에게 어떠한 민·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함)
- 지정된 주차구획 안에서 지정차량, 지정주차기간, 지정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. 다른 주차구획이나 지정 시간이외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단속(견인) 대상이 됩니다.
- 기타 이 유의사항(배정·사용 조건 등)에 정해져 있지 않거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해석에 따릅니다.
- **배정확인**은 **별도의 공지가 없으므로 본인이 확인**하여야 하며 배정이 되신 후에는 정해진 기간에 **입금을 하셔야 합니다. 미납 시에는 배정 제한 조치** 됨.

운영시간 및 주차요금

1. 거주자우선주차장

이용시간		전 일 (24시간)	주 간 (09:00~18:00)	야 간 (19:00~익일08:00)	비 고
주차요금 (월 기준)	거주자	4만원	3만원	2만원	일반구간 적용
	비거주자	5만원	3만5천원	2만5천원	일반구간 적용
	시 설	5만원	3만6천원	2만4천원	비거주자 구분 없음

2. 시설공영주차장(거주자우선주차제 준용)

구 분	전 일	주 간	야 간
운영시간	24시간	09:00 ~ 18:00	19:00 ~ 다음날 08:00
주차요금(월)	5만원	3만 6천원	2만 4천원

3. 노상주차장 야간시간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

구 분	주 간(평일)	야 간(거주자 운영)
운영시간	09:00 ~ 19:00	20:00 ~ 다음날 08:00
주차요금(월)	급지별 시간·정기요금 별도 적용	2만 6천원
비 고	평일 주간, 노상주차장 운영	토·일·공휴일은 24시간 제공(사용)

※ 주차요금 할인 : 관련 법령,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